

지방조직운영규정 개정(안)

현행	검토(안)	비고
제 26 조 【임기】 지방본부 임원의 임기는 규약 제 50 조 【임기】 에 의하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제 48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각급 조직의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 26 조 【임기】 지방본부 임원의 임기는 규약 제 50 조 【임기】 에 의하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규약 제 48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각급 조직의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의미 명확화
제 40 조 【임무】 ① 지부 부서장의 임무는 지방본부 부서장의 임무에 준하며, 홍보부는 정책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단 41 조 2 항의 경우 지원부는 정책, 조직부는 홍보 업무를 통합 운영한다. ② 지부장 유고(징계포함) 시 직무대행은 지부 부서장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 조 【임무】 ① 지부 부서장의 임무는 지방본부 부서장의 임무에 준하며, 홍보부는 정책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단 제 37 조 2 항의 경우 지원부는 정책, 조직부는 홍보 업무를 통합 운영한다. ② 지부장 유고(징계포함) 시 직무대행은 지부 부서장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번호 오류 수정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3 조 【선거권】 공고일 전 조합비 납부일에 조합비를 납부한 모든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다. 단, 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조합원과 사측의 직무명령변경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회복시 <u>조합비 체납자는</u> 선거공고일 전 연속 3 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선거권이 있다. 제 16 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권자 또는 입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의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로 하되 매일 09 시부터 18 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u>투표당일 상오 8 시까지</u> 할 수 있다.	제 13 조 【선거권】 공고일 전 조합비 납부일에 조합비를 납부한 모든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다. 단, 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조합원과 사측의 직무명령변경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회복시 선거공고일 전 연속 3 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선거권이 있다. <u><일부 삭제></u> 제 16 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권자 또는 입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의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로 하되 매일 09 시부터 18 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u>투표전일 18 시까지</u> 할 수 있다.	사측 삭제 선거인명부 착오/누락사항 이의 제기 마감시간 변경

제 18 조 【입후보자의 공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및 조합에 대한 자기 주장 등을 등록마감 <u>익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u>	제 18 조 【입후보자의 공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및 조합에 대한 자기 주장 등을 등록마감 <u>익일까지 공고하고 선거종료시까지 게시한다.</u>	입후자공고 기간 및 게시 기간 명확화
제 19 조 【자격상실】 <u>입후보자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u>	제 19 조 【자격상실】 ① <u>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의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u>	의미 명확화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1 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 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u>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의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u>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1 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 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u>때</u>	
<u>2. 본 규정 제 26 조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u>	<u>2. 본 규정 제 26 조 3 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추가로 제 26 조 1 항 각호의 1 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u>	의미 명확화
<u>3. 위 2 호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		(위반시 조치사항 관련 내용 제 26 조 금지사항으로 이동)
<u>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의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u>		

<u>5. 위 각 호의 처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단,</u> 입후보자의 자격 상실 결정은 지부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본부위원장 및 위원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u>②</u> 입후보자의 자격 상실 결정은 지부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본부위원장 및 위원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조항번호 변경
<u>6. 위 5호의</u>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u>③</u>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조항번호 변경
<u>7. 위 6호의</u>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u>④ 전항의</u>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조항번호 변경
<u>제 26 【금지사항】</u>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회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u>제 26 조 【금지사항】</u> <u>①</u>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회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조항번호 변경

②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최고 득표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10 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 인일 경우 1 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위 ②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선거에는 기존의 후보가 재등록할 수 없다. ④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 39 조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각급 조직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각급 조직대표자에 대하여 각급 조직 조합원의 2/3 이상으로 불신임이 의결 되었을 때 ② 위 제①항 각호에 따른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공고는 각급선거관리 대표위원이 한다. ③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 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②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최고 득표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10 일 이내에 2 차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 인일 경우 1 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위 ②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선거에는 기존의 후보가 재등록할 수 없다. ④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 39 조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각급 조직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각급 조직대표자에 대하여 조직 조합원의 2/3 이상으로 불신임이 의결 되었을 때 <일부 생략> ② 위 제①항 각호에 따른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공고는 각급선거관리 대표위원이 한다. ③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 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용어 변경 사족 삭제
--	---	---------------------------

④ 위원장 등 각급 조직대표자 보궐선거의 선거공고는 선거일 10 일전에 <u>공고하여야 한다.</u> ⑤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일로부터 3 일 이내로 한다. ⑥ 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제 43 조 【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지부대회에서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수 있다. ③ 입후보자는 3 종의 선거운동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④ <u>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및 제재는 본 규정에 준한다.</u>	④ 위원장 등 각급 조직대표자 보궐선거의 선거공고는 선거일 10 일전에 <u>공고한다. 단, 지부장 이하 각급 조직 대표자 선거공고는 선거일 7 일전에 공고한다.</u> ⑤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일로부터 3 일 이내로 한다. ⑥ 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제 43 조 【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지부대회에서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수 있다. ③ 입후보자는 3 종의 선거운동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④ <u>개인 유인물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필”의 날인을 받은 후 제작배포 하여야 한다. 유인물이라 함은 등사기, 인쇄기,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인쇄물을 칭한다.</u> ⑤ <u>위③항에 의거 발행한 유인물 외에는 어떠한 유인물 및 홍보물도 통신매체, 인터넷, 사내매체를 통하여 제작 배포할 수 없다.</u> ⑥ <u>대의원선거 관련 제재 및 금지사항을 규정한 제 19 조, 제 26 조를 준용한다.</u>	2011.10.13 개정안과 정렬성 확보 ④항 신설 (제 22 조 2 항 반복) ⑤항 신설 (제 22 조 3 항 반복) 기존 4 항 의미 명확화
---	--	--

제 46 조 【준용】 대의원 선출은 규약 제 24 조 【선출】 , 지방조직운영규정 제 47 조 【배정기준】 및 제 48 조 【선출】 에 의거 <u>선출하고 기타 대의원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u>	제 46 조 【준용】 ① 대의원 선출은 규약 제 24 조 【선출】 , 지방조직운영규정 제 47 조 【배정기준】 및 제 48 조 【선출】 에 <u>따른다.</u> <u>② 선거절차 등 대의원선거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본 질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본 규정 내용을 준용한다.</u>	②항 신설 (준용 규정 명확화)
---	--	----------------------

처무규정 개정(안)

현행	검토(안)	비고
제 58 조 【직원의 구분】 직원의 직명구분은 책임, 선임, 전임, 수석사무원, 사무원, 사무보조원으로 구분한다. 제 60 조 【채용구분】 본 조합의 직원채용은 일반채용과 특별채용으로 한다. 1. 일반채용은 수석사무원, 사무원, 사무보조원으로 한다. 2. 특별채용은 업무수행상 해당경력이나 전문직 지식(국가공인자격 등)을 필요로 할 시 전문위원으로 특별채용 한다. 제 65 조 【구비서류 및 직원승진】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청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등본 1 통 2. 서약서 1 통 3. 사진 2 매 4. 거주지 약도 1 매 5. 채용신체검사서 1 통 <u>② 사무보조원의 승진은 그 직에서 2년 이상</u>	제 58 조 【직원의 구분】 직원의 직명구분은 책임, 선임, 전임, <u>차장, 과장, 대리</u>로 구분한다. 제60조 【채용구분】 본 조합의 직원채용은 일반채용과 특별채용으로 한다. 1. 일반채용은 <u>차장, 과장, 대리</u>로 한다. 2. 특별채용은 업무수행상 해당경력이나 전문직 지식(국가공인자격 등)을 필요로 할 시 전문위원으로 특별채용 한다. 제65조 【구비서류 및 직원승진】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청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등본 1통 2. 서약서 1통 3. 사진 2매 4. 거주지 약도 1매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u>② 전문위원 또는 일반사무직으로 신규임용 및 승진</u>	직원의 직위 구분 용어 및 승진제도 변경

경과되어야 한다. 사무원 이상은 현저한 공과 능력 인정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시킬 수 있다. 인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사무총장, 각 실장, 지원국장	후 5년 이상 근무 자는 조합인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승진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사무총장, 각 실장, 지원국장	
--	---	--

회계규정 서식 개정(안)

현행	개선안
(서식 제 5 호) 수입(여입)결의서 품의 및 결재 <u>실처장</u> <u>지방재정국장</u>	(서식 제5호) 수입(여입)결의서 품의 및 결재 <u>실장</u>
(서식 제 6 호) 결의서 품의 및 결재 <u>실처장</u> <u>지방재정국장</u>	(서식 제 6 호) 결의서 품의 및 결재 <u>실장</u>
(서식 제 10 호) 결재 <u>사업지원장</u>	(서식 제10호) 결재 <u>사업지원실장</u>

(서식 제5호)

수입(여입)결의서

증빙번호 :

품의 및 결재					구분() 1. 수입 2. 여입 3. 기타		결 재	위원장
요 구 부 서	실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위원장				
					행위년월			사무총장
					등기년월			
					관			
	발의자				항			사업지원실장
	직위				목			
협조의견					금액			
					재정담당국장:			
제목(적요)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령자 성명 : (인)					금융기관			
					계좌번호			
					성 명			

(서식 제6호)

결 의 서

증빙번호 :

품의 및 결재					구분(1)		결 재	위원장
요 구 부 서	실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위원장	1. 지출 2. 여입 3. 기타			
					행위년월			
					등기년월			사무총장
					관			
	발의자				항			
	직위				목			사업지원실장
협조의견					금액			
					재정담당국장:			
제목(적요)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령자 성명 : (인)					금융기관			
					계좌번호			
					성 명			

(서식 제10호)

회계연도
년 월분

결 재	재정국장	사업지원실장	위원장

수입

증빙서

지출

[매수: 매]

수입: 매 원

지출: 매 원

전 책 증제 호



KT노동조합

회 계 감사필	회계감사 대표위원	감사 위원	감사 위원	감사 위원	감사 위원	감사 위원	감사 위원
년 월 일							

상벌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 5 조 【징계기관의 <u>구성원</u>】 본 조합의 징계기관의 <u>구성</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심 징계기관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로 한다. 2. 재심 징계기관은 전국대의원대회로 한다.	제 5 조 【징계기관의 <u>관할</u>】 본 조합의 징계기관의 <u>관할</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심 징계기관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로 한다. 2. 재심 징계기관은 전국대의원대회로 한다. <u>3. 제명요구시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징계시 징계기관은 전국대의원대회로 한다.</u>	용어 변경 (의미 명확화) 3 호 신설 (징계 관할 의미 명확화)
제 6 조 【징계의 <u>관할</u>】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정직(1 년 이내), 정권(2 년 이내), 제명을 <u>의결한다.</u> ② 중앙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정직(1 년 이내), 정권(2 년 이내)을 <u>의결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징계는 제외한다.</u>	제 6 조 【징계의 <u>의결</u>】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정직(1 년 이내), 정권(2 년 이내), 제명을 <u>의결할 수 있다.</u> ② 중앙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정직(1 년 이내), 정권(2 년 이내)을 <u>의결할 수 있다.</u> <u><이하 삭제></u>	용어 변경 (의미 명확화) 사족 삭제 (제 5 조 3 호에 의미 명확화)
제 8 조 【징계<u>의결</u>의 요구】 징계<u>의결</u>의 요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징계요구서(별지 제 1 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 8 조 【징계의 <u>요구</u>】 <u>징계의 요구</u>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징계요구서(별지 제 1 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각급	의미 명확화 (징계 요구)

각급 징계기관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조합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는 해당 지부장(지방본부 경유 또는 직접)이 제출 2. 지부임원, 분회장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는 지방본부위원장이 제출 3. 임원, 산하조직 임원, 중앙간부 및 산하조직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는 위원장이 요구 제 9 조 【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10 조 【징계혐의자의 조사】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기준에 따른 양정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산하조직의 지부장이 징계요구서를 제출 시 조사권을 지방본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실시한다. ③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징계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징계기관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조합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는 해당 지부장(지방본부 경유 또는 직접)이 제출 2. 지부임원, 분회장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는 지방본부위원장이 제출 3. 임원, 산하조직 임원, 중앙간부 및 산하조직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는 위원장이 요구 제 9 조 【징계의 시효】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10 조 【징계혐의자의 조사】 ① 징계요구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기준에 따른 양정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②항 삭제> ②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징계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의미 명확화 의미 명확화 및 서식 명시 사족 삭제 의미 명확화
---	---	--

제 11 조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 ① <u>징계의결요구권자가 각급 징계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u>(별표 1)에 의한다. ② 징계사유가 <u>양정</u>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징계사유의 기준에 의한다. ③ 징계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와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중한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 11 조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 ① <u>징계요구자가 징계를 요구할 때는 징계기준</u>(별표 1)에 의한다. ② 징계사유가 <u>징계</u>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징계사유의 기준에 의한다. ③ 징계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와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중한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위를 기준으로 한다.	의미 명확화 용어 오류 수정 용어 오류 수정
제 12 조 【징계의결의 기한】 <u>각급 징계기관에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u> 1. 전국대의원대회<u>는</u> 접수한 날로부터 차기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 시 심의·의결한다. 2. 중앙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심의 의결한다.	제 12 조 【징계의결의 기한】 <u>위원장은 징계요구서를 접수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각급 징계기관에 의결을 요구한다. (별지 제 2 호 서식)</u> 1. 전국대의원대회가 징계기관인 경우 징계요구 또는 재심청구를 받은 해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 중앙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가 징계기관인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심의 의결한다.	의미 명확화 및 서식 명시 의미 명확화 (법적 리스크 보완) 의미 명확화
제 14 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각급 징계기관에서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다. 단, 출석통지서는 10 일 전에 배달증명으로 송부한다	제 14 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u>각급 징계기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단, 출석을</u>	의미 명확화

② 당해 징계기관에서는 징계혐의자가 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 조사만으로 할 수 있다. 제 15 조 【심문과 진술 권】 ① 징계기관에서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 혐의자는 증인을 채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기관에서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또는 증거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기관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7 조 【의결】 ① 징계의 의결은 징계혐의자를 제외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신임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일 10 일전까지 출석통지서 (별지 제 3 호 서식)를 배달증명으로 송부한다.</u> <u>② 징계의결일까지 출석 또는 서면 소명이 없을 경우 징계혐의자는 소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소명없이 절차를 진행한다.</u> 제 15 조 【심문과 진술 권】 ① 징계기관에서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 혐의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기관에서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또는 증거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④ <u>징계요구자는 징계기관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제 17 조 【의결】 ① 징계의 의결은 징계혐의자를 제외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미 명확화 사족 삭제 사족 삭제 의미 명확화
---	---	---

제 18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규약 제 83 조 【징계의 종류】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9 조 【징계통고】 징계기관에서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 처분사유서(별지 3 호 서식)를 의결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피징계자 및 징계요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피징계자가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소속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 【징계의 효력】 ① 징계의 효력은 징계의결서(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 피징계자에게 의결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는 당해 징계기관 및 상급징계 기관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분의 내용변경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23 조 【재심청구】 ① 피징계자 또는 징계의결요구자가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 18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규약 제 74 조 【징계의 종류】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9 조 【징계통고】 <u>징계기관에서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 의결서(별지 제 4 호 서식)를 의결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 시 7 일 이내에 피징계자 및 징계요구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서(별지 제 5 호 서식)를 송달하여야 한다. 피징계자가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소속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 20 조 【징계의 효력】 ① <u>징계의 효력은 전조의 징계처분사유서에 의하여 발생하며, 피징계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u> <②항 삭제> 제 23 조 【재심청구】 ① 피징계자 또는 징계요구자가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 청구서(별지	조항번호 오류 수정 징계통고 절차 명확화 의미 명확화 징계의결 무효화 조항 삭제 의미 명확화
---	--	--

재심 청구서(별지 <u>5호</u>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본 규정 제 12 조 【징계의결의 기한】에 의거 재심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24 조 【조합간부에 대한 제재】 위원장은 본 조합의 임원(회계감사위원대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대표위원 제외), 산하조직의 임원 또는 조합간부가 규약 제 73 조 【조합원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조합간부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또는 지방본부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조합간부 직무에 대한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조합간부의 직무에 대한 한시적 정지 시에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3 개월 또는 6 개월의 기간 동안 조합간부로서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조합간부에 대한 제재 시 재심 청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25 조 【처분의 효력】 ① 재심의 처분은 원심처분보다 중하게 할 수 없다.	<u>제 6 호</u>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본 규정 제 12 조 【징계의결의 기한】에 의거 재심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u>③ 재심청구는 원심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u> 제 24 조 【조합간부에 대한 제재】 ① 위원장은 본 조합의 임원(회계감사위원<u>회</u>대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u>회</u>대표위원 제외), 산하조직의 임원 또는 조합간부가 규약 제 73 조 【조합원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조합간부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또는 지방본부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조합간부 직무에 대한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조합간부의 직무에 대한 한시적 정지 시에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3 개월 또는 6 개월의 기간 동안 조합간부로서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조합간부에 대한 제재 시 재심 청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25 조 【<u>재심</u>처분의 효력】 ① 재심의 처분은 원심처분보다 중하게 할 수 없다.	서식번호 오류 수정 ②항 신설 (제 25 조 3 항에서 이동) 조항번호 추가 용어 오류 수정 조항번호 변경 조항번호 변경 의미 명확화
---	--	--

②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u>③ 재심청구는 원심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u> <별지 제 1 호 서식> <u>징계의결요구서</u> <별지 제 2 호 서식> <u>출석통지서</u> <별지 제 3 호 서식> <u>징계처분사유서</u> <별지 제 4 호 서식> 징계의결서	②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u><③항 삭제></u> <별지 제 1 호 서식> <u>징계요구서</u> <u>위와 같이 징계를 요구함</u> <별지 제 2 호 서식> <u>징계의결요구서</u> <u>위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함</u> <u>KT 노동조합위원장</u> <별지 제 3 호 서식> <u>출석통지서</u> KT 노동조합 <u>상벌</u>규정 제 14 조①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합니다. <u>KT 노동조합 위원장</u> <별지 제 4 호 서식> 징계의결서 <u>위와 같이 의결함</u> <u>KT 노동조합 위원장 귀하</u>	조항 삭제 (제 23 조 3 항으로 이동) 서식 5 호를 1 호로 변경 서식 1 호를 2 호로 변경 서식 2 호를 3 호로 변경
--	--	--

<별지 제 5 호 서식> <u>징계요구서</u>	<별지 제 5 호 서식> <u>징계처분사유서</u> <u>위와 같이 처분되었음을 통보함.</u> <u>KT 노동조합 위원장</u> <별지 제 6 호 서식> <u>재심청구서</u> <u>KT 노동조합 상별규정 제 23 조①항에 의거하여</u> <u>재심을 청구합니다.</u> <u>KT 노동조합 위원장 귀하</u>	서식 3 호를 5 호로 변경 서식 추가
--	---	-------------------------------------